

의안번호	2216884
의 퇴 인	강경숙 의원
회 답 일	2026.04.21.
추계번호	26C095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2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 등)	(제1항) 교육감은 관할 지역 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의 국적, 사용 언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제1항에 따른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의2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육감이 다문화학생등의 외국어를 교육하기 위한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교육청은 중앙 및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여 학습자료 보급,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¹⁾

1)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 ② ~ ④ (생략)
-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그러나,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거나, 개별학교 단위의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별도의 전담기관이 부재함
 -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를 말하며, 현재 5개 지역 53개 언어가 특수외국어로 지정됨²⁾
 - 교육부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중점 지원 언어(25개)를 선정하여 교육과정 및 평가 인증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 [참고자료 1] 특수외국어 지정 현황
 - * [참고자료 2] 전문교육기관별 중점 지원 언어
- 이에 개정안은 다문화학생등을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안 시행으로 센터가 신규 설치·운영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역 여건에 따른 사업 규모의 불확실성 및 기존 센터와의 업무 범위 중복으로 이를 산출하기 어려움

- 개정안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고, 지역별로 다문화학생등 거주 규모, 교육 수요 등 제반 여건이 상이하여 센터 설치 여부 및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 [참고자료 3] 지역별 다문화학생 현황
-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의 기존 사업이 존재하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중복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분만을 분리하여 추계하기 곤란함
 - * [참고자료 4] 시·도교육청별 외국어 교육 지원 예산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2. ~ 5. (생략)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1] 특수외국어 지정 현황

지역	언어	사용 국가
1. 중동·아프리카(12)	다리어	아프가니스탄
	르완다어	르완다
	스와힐리어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아랍어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에리트레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이집트, 지부티, 차드,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아제르바이잔어	아제르바이잔
	암하라어	에티오피아
	이란어	이란
	줄루어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어	사이프러스, 튀르키예
	파슈토어	아프가니스탄
	하우사어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히브리어	이스라엘
2. 유라시아(7)	몽골어	몽골
	우즈베크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어	우크라이나
	카자흐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어	키르기즈
	타지키스탄어	타지키스탄
	투르크멘어	투르크메니스탄
3. 인도·아세안(14)	네팔어	네팔
	라오스어	라오스
	말레이시아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다루살람
	미얀마어	미얀마
	베트남어	베트남
	벵골어	방글라데시
	산스크리트어	네팔, 인도
	신할리즈어	스리랑카
	우르두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
	크메르어	캄보디아
	타갈로그어	필리핀
	태국어	태국
	힌디어	인도, 피지

지역	언어	사용 국가
4. 유럽(18)	그리스어	그리스, 사이프러스
	네덜란드어	네덜란드, 벨기에, 수리남
	노르웨이어	노르웨이
	덴마크어	덴마크
	라트비아어	라트비아
	루마니아어	루마니아
	벨라루스어	벨라루스
	불가리아어	불가리아
	세르비아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코소보
	스웨덴어	스웨덴
	슬로바키아어	슬로바키아
	이탈리아어	산마리노, 스위스, 이탈리아
	조지아어	조지아
	체코어	체코
	크로아티아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폴란드어	폴란드
	핀란드어	핀란드
	헝가리어	헝가리
5. 중남미(2)	브라질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동티모르,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적도 기니, 카보베르데, 포르투갈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 2] 전문교육기관별 중점 지원 언어

지원기관 (언어 수)	중점 지원 언어
단국대 (4개)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부산외대 (10개)	라오스어, 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크메르어, 태국어, 터키어, 힌디어
한국외대 (21개)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라오스어, 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이란어, 이탈리아어, 카자흐어, 크로아티아어, 태국어, 터키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체코어, 헝가리어, 힌디어

주: 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는 각각 1개의 언어로 간주함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2025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 계획 (2025.2), 5p

[참고자료 3] 지역별 다문화학생 현황

구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중국 (한국계)	중앙 아시아	캄보 디아	일본	러시아 및 중앙 아시아 (한국계)	몽골	러시아	태국	미국	유럽	중동	대만	아프 리카	인도 네시아	기타	합계
서울	3,924	8,009	1,309	2,792	445	408	1,200	143	1,040	255	253	474	224	129	264	175	92	866	22,002
부산	3,412	1,455	757	150	205	327	402	97	118	246	91	107	98	30	93	22	57	334	8,001
대구	2,733	1,147	558	125	280	456	167	192	116	113	107	102	59	31	28	34	32	273	6,553
인천	2,789	5,502	797	652	1,250	230	393	641	396	590	184	130	115	449	127	121	44	595	15,005
광주	1,920	791	536	52	404	324	173	517	126	169	80	35	49	16	6	34	18	153	5,403
대전	1,448	711	590	63	85	278	116	33	142	49	70	55	35	31	28	26	28	171	3,959
울산	1,523	1,085	382	110	138	170	133	34	82	55	71	26	36	34	20	11	17	149	4,076
세종	270	206	93	22	55	41	59	8	11	9	8	36	15	1	16	2	6	28	886
경기	10,810	21,574	3,334	4,355	2,592	1,207	2,130	2,607	1,554	1,270	944	791	410	315	313	431	215	2,109	56,961
강원	2,231	741	663	117	193	406	225	49	103	89	126	60	25	12	29	14	17	149	5,249
충북	2,960	1,493	837	178	456	313	189	649	259	218	160	34	37	27	25	22	13	247	8,117
충남	4,562	2,665	1,451	503	1,312	601	350	1,009	243	487	202	88	29	31	30	31	64	346	14,004
전북	4,305	1,502	1,122	171	156	747	344	45	195	40	138	60	28	37	29	16	24	285	9,244
전남	5,615	1,390	1,573	167	184	965	443	31	246	56	237	53	22	21	29	17	39	202	11,290
경북	6,532	1,954	1,192	246	519	748	242	541	209	141	210	92	49	38	32	44	74	333	13,196
경남	7,163	2,015	1,195	199	860	829	545	471	179	260	199	73	96	70	46	38	80	515	14,833
제주	1,160	889	483	132	56	128	123	13	40	16	34	42	46	13	28	8	7	211	3,429
합계	63,357	53,129	16,872	10,034	9,190	8,178	7,234	7,080	5,059	4,063	3,114	2,258	1,373	1,285	1,143	1,046	827	6,966	202,20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참고자료 4] 시·도교육청별 외국어 교육 지원 예산

(단위: 천원)

구분	'25 집행액	'26 예산 편성액	지원 언어
서울	—	—	—
부산	—	—	—
대구	104,000	120,000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
인천	60,660	67,000	베트남어, 중국어
광주	—	—	—
대전	28,160	48,000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울산	—	—	—
세종	224,840	232,000	베트남어, 러시아어
경기	200,000	400,000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강원	121,409	208,500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충북	159,000	101,000	베트남어, 네팔어
충남	21,000	18,750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전북	368,450	304,650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 크 메르어, 타갈로그어, 우즈베크어
전남	264,560	225,000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경북	48,111	62,350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경남	72,000,000	138,000,000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 즈베크어
제주	140,221	105,898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합계	73,740,411	139,893,148	—

주: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액임

자료: 시·도교육청